

July 29, 2020

Legal Update

전자금융거래법 14년만의 전면 개편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0. 7. 27.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은 이른바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고,페이업체들은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금융 관련 제도의 큰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한 내용과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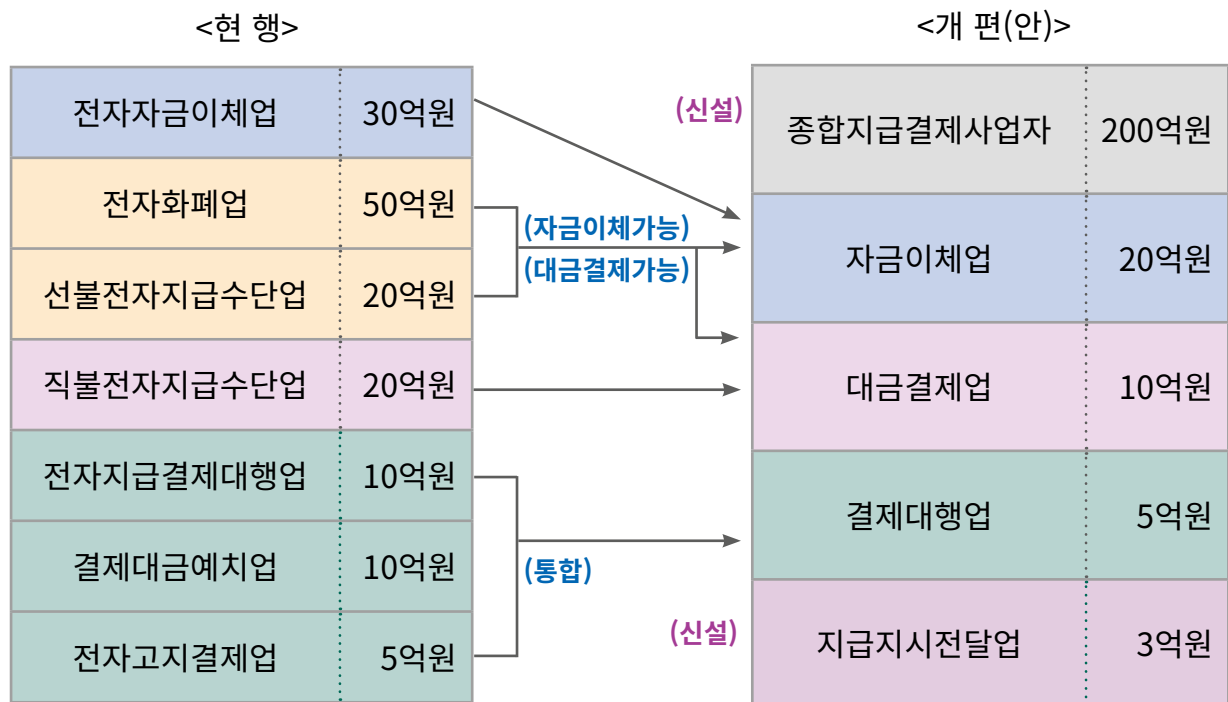
1. 종합지급결제사업 및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MyPayment) 신설

- **종합지급결제사업**이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 송금 이외에도 계좌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계좌 관리 업무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계좌를 이용하지 않고도 상당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예금 및 대출업무는 영위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받고 고객자금을 모두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마이페이먼트(MyPayment)**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의 모든 계좌에 대한 결제·송금 등의 이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U에서 2018. 1. 도입된 PSD2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좌를 보유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동의를 받아 결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에 대해 접근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마이페이먼트를 통하면 전자상거래에서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가 가능해져 수수료와 거래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고객자금을 직접 보유하거나 정산에 관여하지 않아 비교적 낮은 수준의 등록요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스몰라이센스(소규모인허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전자금융업종 기능별 통합·간소화 (現 7개 → 3개) 및 스몰라이센스 (Small License) 체계 도입

-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7개의 세분화 되어 있는 업종을 기능별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여 3개로 축소하게 됩니다.



- **자금이체업**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입금·출금 이체 권한이 부여되고, 송금 절차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이는 마이페이먼트가 송금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구분되며, 허가제로 운영되며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이용자보호 등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대금결제업**이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에서 디지털 지급수단을 통해 재화·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입니다(현재의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화폐업 유사). 대금결제업자는 재화·용역의 대가지급을 전제로 한 자금만 결제할 수 있으나, 다양한 디지털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가 가능하여 혁신적인 결제서비스의 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결제대행업**이란 결제·정산·예치·고지 등 디지털금융의 결제에 수반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 서비스(현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유사)를 말하며, 기존에 여러 라이선스로 취급하여야 했던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 앞으로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는 영업규모에 따라 자본금·등록 등 특례를 부여하되 영업 확장시 자본금 등을 상향 적용(Sliding Scale 방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거래액 100억원, 30억원 이하인 경우 각 라이선스의 최소자본금을 1/2, 1/4로 인하하고 영업을 확장되는 경우 자본금 확충 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3. 전자금융업 범위 확대

- **후불결제**: 기존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신용거래(후불결제)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대금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30만원 기준으로 조정)가 허용됩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상향**: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 최대 충전 한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한도금 200만원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없었던 2008년 설정된 후 상향 없이 유지되었던 것인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고액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의 역외적용

-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은 상호주의만 규정하여, 국외 소재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내 이용자·가맹점·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국외 사업자의 국경간 디지털 금융거래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발행된 지급수단으로서 국내에 이용자 또는 가맹점을 두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국외 사업자의 특수성 고려 규제 설정).

5. 추진계획 및 예상 이슈

- 금융위원회는 2020.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상향 등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가이드라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는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방안의 세부·연관 과제{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3분기),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4분기),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는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구체화된 방안을 순차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번 방안에서 기존에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발표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개편을 할 것인지가 주목되며, 현재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만을 전자금융업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인정하였는데, 앞으로 개편되는 전자금융업에는 기존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포섭되지 않았던 간편송금 업무, 전자고지결제업, 결제대금예치업이 포함되므로 외국환거래법령에도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경간 해당 업무를 하려면 기타외국환업무 등록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외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되면 이들이 하는 업무는 국경간 업무가 전제되는바, 외국환거래법령상 어떻게 취급할지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은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금융플랫폼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들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T. 02-316-1624

E. jhcho@shinkim.com



황현일

소속변호사

T. 02-316-4453

E. hihwang@shinkim.com



오재청

소속변호사

T. 02-316-1782

E. jcch@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